

13. 水道法施行規則中改正令(案)立法豫告

환경부공고 제1997-66호 1997. 11. 20

주 요 골 자

- 가.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 어로행위를 할 수 있는 자를 상수원보호구역지정전부터 계속 거주하여온 자로서 생계를 목적으로 자망어업 또는 주낚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정함.
- 나. 중수도 설치를 통한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는 중수도설치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내에서 중수도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할 수 있도록 함.
- 다. 물의 절약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및 주택에 설치하는 절수설비의 종류를 대·소변기, 샤워헤드, 수도꼭지로 확대하고 절수설비기준을 토수성능으로 정함.
- 라. 농어촌에서 소규모로 설치·운영되고 있는 간이상수도의 인가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인가시 제출하는 구비서류 종류를 감축함.
- 마. 과태료의 부과권자가 지방자치단체일 경우에는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.
- 바. 간이상수도 및 전용수도 인가처리기간을 현행 30일에서 21일로 단축함.

계 정 이 유

- 용수의 효율적 이용과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수도법이 개정(1997. 8. 28. 법률 제5,395호)됨에 따라 건축물 및 주택에 설치하는 절수설비의 종류 등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, 기타 현행규정상의 시행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주택회보